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45
----------	-------

발의연월일 : 2025. 6. 27.

발 의 자 : 서삼석 · 김동아 · 이원택
박용갑 · 문대림 · 임호선
윤준병 · 조계원 · 임미애
문금주 · 정을호 · 위성곤
이개호 · 안도걸 · 김영배
서미화 · 허 영 · 조인철
이병진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및 어업의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생산량 향상과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됨.

최근 기후 위기로 야기되는 가뭄, 태풍, 냉해,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해 시설 철거비 및 복구비와 생계 안정, 경영 유지를 위해 보조 및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농어민의 경우 생산물의 생육시기가 장기간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수확량을 확보하지 못해 경제적인 피해가 가중되며,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함.

이에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등을 추가하는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및 어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에 대해 통계를 발간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등).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
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이
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대책의 목표
2.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6. 재해대책을 통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보상기준의 단가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재해대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7호에 따른 보상기준의 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으로, “마련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복구에”를 각각 “복구 및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보장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어가에 대한”을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다.

5.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7.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재해발생 긴급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재해발생 피해지에 대한 원인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발생한 피해지에 대해 매년 원인조사(이하 “원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통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2항제9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다목 중 “감면”을 각각 “감면과 금리 인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재해대책의 목표</u> <u>2.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u> <u>3.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4.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u> <u>5.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u>

6. 재해대책을 통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

7. 보상기준의 단가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
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따라 재해대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다만, 제2항제7호에
따른 보상기준의 단가는 농림
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
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하는 경우 제3조의3제3항에 따
른 통계자료를 반영하여야 한
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
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후단 신설>

1. (생 략)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
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
에 관한 사항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
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
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재해대책) ① -----
-----기본계획 및 시행계
획에 따라 다음-----
-----마련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
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
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
-----복구
및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
산비용 보장에-----
3. -----

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 구에 관한 사항	-----복 구 및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보장에-----
4.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
<신 설>	5.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6.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 해 예방에 관한 사항
<신 설>	7.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병충 해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8.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 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 에 관한 사항
5. (생 략) <신 설>	9.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의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 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 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제3조의2(재해발생 긴급 실태조 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신 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재해발생 피해지에 대한 원인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발생한 피해지에 대해 매년 원인조사(이하 “원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

	<u>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u> <u>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u> <u>에게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에</u> <u>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u> <u>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u> <u>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u> <u>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u> <u>다.</u>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u> <u>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u> <u>원인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u> <u>과를 통계로 작성하여야 한다.</u> ④ <u>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u> <u>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u>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u> <u>산부령으로 정한다.</u>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생 략)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 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 음 각 호에 따른다.	② ----- ----- ----- -----.
1. ~ 8의2. (생 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9.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 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 원하는 경우	9. ----- ----- -----

가.·나. (생 략) 다. 영농자금(營農資金)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농업정책자 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u>감면</u> 라. (생 략) 10.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 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 음 각 호에 따른다. 1.·2. (생 략) 3.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안 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 원하는 경우 가.·나. (생 략) 다. 영어자금(營漁資金)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업정책자금 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u>감면</u> 라. (생 략) 4. (생 략) ④ ~ ⑧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 -----<u>감면과 금리 인하</u> 라.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③ ----- ----- ----- -----. 1.·2. (현행과 같음) 3.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 -----<u>감면과 금리 인하</u> 라.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	--